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41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나54174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1261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김형석, 박형일

피고, 피항소인1. B

2. C

3. D

4. E

피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C, 모 B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화

담당변호사 양판식, 김학웅

변론 종결2020. 6. 25.

판결 선고2020. 7. 23.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19. 10. 29. 선고 2019가단126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인제등기소 2018. 12. 27. 접수 제11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는 같은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2. 27. 접수 제11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B, C, E는 같은 목록 3에서 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2. 27. 접수 제11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7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8. 12. 27. 접수 제1120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송종선

판사김현정

판사신흥호

별지